

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28
----------	-----

제안이유

- 조례의 내용상 불부합하는 내용수정으로 운용에 효율을 꾀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조문개정(도지사가 따로 → 규칙으로)

첨 부

-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신구조문대비표 1부

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중 “도지사가 따로”를 “규칙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<u>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</u></p>	<p>제15조(시행규칙)..... <u>규칙으로</u>..... ...</p>